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2248
----------	------

제안년월일 : 2021년 3월 2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송명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161호)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219호)을 일괄 심사한 결과,
-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공공시설의 예약취소 시 환불기준을 명확히 하고, 선납액 일체 미반환 등의 과도한 공제방식을 개선하며, 현행 조례상 미비한 이용료 반환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한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도시공원 사무위임 및 사무관할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골자

가. 이용료 반환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안 제19조제1항).

나.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기준에 따라 신설함(안 제30조 신설).

(1)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대상 구역 표기 및 계약기간(안 제30조제1호 및 제2호).

(2) 부지사용료 산정 및 지급방식(안 제30조제3호 및 제4호).

(3) 그 밖에 계약의 변경 및 준수사항 등(안 제30조제5호~제10호)

다. 제30조의 신설로 현행 제30조 및 제31조의 위치를 이동하고,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사무 등을 도시공원 위임사무로 추가하며, 시·자치구 간 도시공원 사무관할을 조정함(안 제31조 및 제32조, 안 별표 5 및 별표 6).

라. 그 밖에 공원시설 이용료 명칭을 명확히 함(안 별표 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사전 납부된 입장료·이용료는 환불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2.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또는 예약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반환
 3. 사용일 6일 ~ 3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4. 사용일 2일 ~ 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5.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불가
-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제31조 및 제32조로 하고,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이하 “공원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에는 공원부지사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주소·소유자·면적 및 지목을 포함한다)을 표기하여야 한다.

2. 공원부지사용계약의 최초 계약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하고, 계약의 만료 및 갱신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은 계약의 만료 및 갱신 여부를 만료일 전년도 5월 31일까지 공원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만료 및 갱신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 가목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 만료일 다음날부터 전 계약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계약이 갱신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합의한 경우는 그 방식을 적용한다.

라. 계약의 변경은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다.

3. 부지사용료의 산정방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준용한다. 다만,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방식으로 부지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4. 공원관리청은 공원부지사용계약에 따른 부지사용료를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가. 토지소유자는 계약한 날부터 1년 단위(1년 미만 단위는 그 계약기간만큼을 계산)로 부지사용료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공원관리청은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부지사용료 지급시기와 방법은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공원부지사용계약 부지의 공원시설은 공원관리청이 설치 및 관리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6. 공원부지사용계약의 변경은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 변경은 제 2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공원부지사용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1개월 이내에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적정한 이행요청을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8. 해당 부지에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이 아닌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공원부지사용계약을 하여야 한다.
9. 공원관리청은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않고 도시공원의 공중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경우 토지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공원부지사용계약 토지를 도시공원 설치 전까지 사용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10. 그 밖에 공원부지사용계약 방법 및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2의 공통의 종별란 중 “야영장”을 “야영장(캠핑장)”으로, “야영장 물품대여료”를 “야영장(캠핑장) 물품대여료”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제30조제1항 관련)”을 “(제31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5의 공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서울특별시	자 치 구
공 원	도시계획 시설(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10만㎡ 이상의 근린·주제공원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에 따라 2020년 6월 28일 이전 공원 포함) ◦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원 ◦ 법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공원 ◦ 어린이공원 ◦ 면적 10만㎡ 미만의 근린·주제공원
	도시자연 공원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소관 사무를 제외한 도시자연공원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6월 28일 이전 자치구 사무공원 또는 녹지에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20. 6. 29. 시행)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별표 5 중 기타란을 삭제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제31조제1항 관련)”을 “(제32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6 사무명란 제2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하고, 같은 란에 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공원부지사용계약에 관한 사무	◦ 같은 법률 제12조의2	
--------------------	----------------	--

별표 6 사무명란 제2호자목(종전의 제2호아목) 다음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 같은 법률 제17조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료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된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체결한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요금 등의 환불) ① 인터넷 예약 등으로 사전 납부된 입장료 · 이용료는 환불할 수 있으며 환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생략)</p> <p><신설></p>	<p>제19조(요금 등의 환불) ① 사전 납부된 입장료 · 이용료는 환불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2.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또는 예약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반환 3. 사용일 6일~3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4. 사용일 2일~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5.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불가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신 설>

제30조(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
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이하 “공
원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에는
공원부지사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주소·소유자·면적 및
지목을 포함한다)을 표기하여야
한다.

2. 공원부지사용계약의 최초 계약기
간은 3년 미만으로 하고, 계약의
만료 및 갱신은 다음 각 목에 따
른다.

가.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
은 계약의 만료 및 갱신 여부
를 만료일 전년도 5월 31일까
지 공원관리청 또는 토지소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
우,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
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만료 및 갱신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 가목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
우, 만료일 다음날부터 전 계
약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계약

이 갱신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합의한 경우는 그 방식을 적용한다.

라. 계약의 변경은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부지사용료의 산정방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준용한다. 다만,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방식으로 부지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4. 공원관리청은 공원부지사용계약에 따른 부지사용료를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가. 토지소유자는 계약한 날부터 1년 단위(1년 미만 단위는 그 계약기간만큼을 계산)로 부지사용료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공원관리청은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부지사
요금 지급시기와 방법은 토지
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협의하
여 조정할 수 있다.

5. 공원부지사용계약 부지의 공원시
설은 공원관리청이 설치 및 관리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공원관
리청이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6. 공원부지사용계약의 변경은 토지
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지 또
는 계약기간 변경은 제2호의 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

7. 공원부지사용계약에 대하여 계약
의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가. 1개월 이내에 계약내용을 이
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적정한 이행요청
을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계약의 위반상태가 지속
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을 이유
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

는 것으로 한다.

8. 해당 부지에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이 아닌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공원부지사용계약을 하여야 한다.

9. 공원관리청은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않고 도시공원의 공중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경우 토지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공원부지사용계약 토지를 도시공원 설치 전까지 사용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10. 그 밖에 공원부지사용계약 방법 및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제31조 (생 략)

[별표 2] 공원시설 이용료(제15조제1항 관련)

공원별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체육 경기	기타 행사	
공 통	(생 략)				
	야영장	야영장소 1회당	10,000~30,000	◦ 입소일(1박2일 기준)이 공휴일이 아닌 월~목요일인 경우 20인(야영장소 5면) 이상 이용 시 30% 할인	
		전기 1회당	3,000~5,000		
	야영장 물품대여료	야영텐트 1회당	5,000~20,000		
		1인용매트 1회당	1,000~1,500		
	(생 략)				

제31조·제32조 (현행 제30조 및 제31조와 같음)

[별표 2] 공원시설 이용료(제15조제1항 관련)

공원별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체육 경기	기타 행사	
공 통	(현행과 같음)				
	야영장 (캠핑장)	야영장소 1회당	10,000~30,000	◦ 입소일(1박2일 기준)이 공휴일이 아닌 월~목요일인 경우 20인(야영장소 5면) 이상 이용 시 30% 할인	
		전기 1회당	3,000~5,000		
	야영장 (캠핑장) 물품대여료	야영텐트 1회당	5,000~20,000		
		1인용매트 1회당	1,000~1,500		
	(현행과 같음)				

남산공원	(생략)
서울대공원	(생략)

[별표 5] 공원·녹지의 사무구분(제30조제1항 관련)

구분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 10만㎡ 이상의 근린·주제공원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원 법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공원 어린이공원 면적 10만㎡ 미만의 근린·주제공원
	<신설>	
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및 시 관리시설 주변의 완충녹지 및 연결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 소관 사무를 제외한 완충녹지 및 연결녹지와 경관녹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자연공원구역 	

[별표 6] 사무위임(제31조제1항 관련)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1. 도시계획시설(공원·유원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단, 서울특별시의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입안·설치할 수 있다)가. 조성계획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구청장, 동부·중부·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대공원장, 서울식물원장

남산공원	(현행과 같음)
서울대공원	(현행과 같음)

[별표 5] 공원·녹지의 사무구분(제31조제1항 관련)

구분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 10만㎡ 이상의 근린·주제공원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에 따라 2020년 6월 28일 이전 공원 포함)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원 법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공원 어린이공원 면적 10만㎡ 미만의 근린·주제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시설(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6월 28일 이전 자치구 사무 공원 또는 녹지에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20. 6. 29. 시행)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및 시 관리시설 주변의 완충녹지 및 연결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 소관 사무를 제외한 완충녹지 및 연결녹지와 경관녹지
<삭제>		

[별표 6] 사무위임(제32조제1항 관련)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1. 도시계획시설(공원·유원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단, 서울특별시의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입안·설치할 수 있다)가. 조성계획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구청장, 동부·중부·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대공원장, 서울식물원장

입안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 설치 및 관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2조 및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43조	
다. 소공원 및 어린이 공원의 조성계획 (변경)결정	◦ 같은 법률 제16조	구 청 장
2. 도시공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동부·중부·서부 공원 녹지 사업 소장, 서울대 공원장, 서울식물원장
가.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인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나.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 같은 법률 제24조	
다. 도시공원 원상회복명령	◦ 같은 법률 제25조	
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출입제한 등	◦ 같은 법률 제27조 및 제33조	
마. 토지매수의 청구 및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 같은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제32조	
바. 공원입장료·이용료·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및 점용료 강제징수	◦ 같은 법률 제40조·제41조 및 제43조	
<u>< 신 설 ></u>	<u>< 신 설 ></u>	
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청문	◦ 같은 법률 제45조 및 제47조	
아.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률 제49조 및 제56조	
<u>< 신 설 ></u>	<u>< 신 설 ></u>	

입안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 설치 및 관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2조 및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43조	
다. 소공원 및 어린이 공원의 조성계획 (변경)결정	◦ 같은 법률 제16조	구 청 장
2. 도시공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동부·중부·서부 공원 녹지 사업 소장, 서울대 공원장, 서울식물원장
가.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인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나.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 같은 법률 제24조	
다. 도시공원 원상회복명령	◦ 같은 법률 제25조	
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출입제한 등	◦ 같은 법률 제27조 및 제33조	
마. 토지매수의 청구 및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 같은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제32조	
바. 공원입장료·이용료·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및 점용료 강제징수	◦ 같은 법률 제40조·제41조 및 제43조	
사. <u>공원부지사용계약에 관한 사무</u>	◦ <u>같은 법률 제12조의2</u>	
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청문	◦ 같은 법률 제45조 및 제47조	
자.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률 제49조 및 제56조	
차. <u>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u>	◦ <u>같은 법률 제17조</u>	